

제3055호  
2024. 1. 5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 
편집인 : 홍보담당관 유진영  
전화 : 3396-4955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자치법규

선	기관 의 장
람	

# 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4-19호 :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.. 2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9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월 4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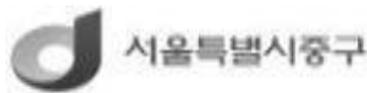
- 가. 세무부서장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규정 추가(제9조)
  - 기존에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
- 나. 제10조(연장신청에 대한 결정) 삭제
  - 조례 제23조에 동일 내용 신설
- 다. 조사기간 연장 통보 관련 인용 조항 수정(제12조)
  - 인용 조항을 “제10조”에서 “조례 제23조”로 수정
- 라. 별지 제11호서식 변경(안 별지)
  - 제9조의 개정사항을 서식에 반영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감사담당관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, 전화 : 02-3396-8021, 팩스 : 02-3396-9017~8, email : nirva1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10조”를 “조례 제23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[별지 제11호서식]

### 중 구

수신 납세자보호관

(경유)

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

「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납 세 자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,외국인) 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	
신청 내용	조사대상 세목			
	당초 조사기간	~		
	연장신청 조사기간	~		
	연장신청 사유			

끝.

### 발 신 명 의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도로명주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팩스번호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개 구분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조사기간 연장신청)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(공휴일·토요일 제외,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)전까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세법칙조사(조사유형이 전 환된 경우 포함)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.	제9조(조사기간 연장신청)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 인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 여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서식에 따 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0조(연장신청에 대한 결정)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. 1.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: 승 인 2.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: 불 승인	<삭 제>
제12조(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)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 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.	제12조(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) ① ----- 조례 제23조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 ③ (생략)	